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53

발의연월일 : 2026. 10. 27.

발 의 자 : 김용만・한민수・박민규 윤종군・강준현・김현정 박상혁・박홍배・복기왕 손명수・민병덕・김형연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상법」상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권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의 의

사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사실 및 이의제기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를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사실 및 계약갱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기간을 확대하며, 가맹본부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요청의 수락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계약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2).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가맹계약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맹본부는 제4항 본문에 따라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

신을 요구한 경우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사실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 갱신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

⑥ 가맹본부가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가맹본부에 계약갱신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종전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종전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6항 전단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가맹계약은 종전 가맹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종전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제6항 후단에 따른 계약해지의 통지를 한 경우 그 해지는 가맹본부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점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

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사망·중대한 질병 또는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급격한 상권의 변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 요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부터 6개월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간 평균 매출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하여 중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가맹본부가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재산상 또는 경영상 부담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거절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에 가맹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해지의 원인이 된 자신의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위약금의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임대장비, 교육자료 등 영업 지원 물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가맹계약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⑤ 가맹본부는 제4항 본문에 따라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사실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 갱신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
<신 설>	⑥ 가맹본부가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가맹본부에 계

	약갱신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종전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⑦ 가맹점사업자가 종전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6항 전단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가맹계약은 종전 가맹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종전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제6항 후단에 따른 계약해지의 통지를 한 경우 그 해지는 가맹본부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 설>	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점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가맹본부

	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사망·중대한 질병 또는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급격한 상권의 변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 요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부터 6개월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간 평균 매출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하여 중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4. 가맹본부가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재산상 또는 경영상 부담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거절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에 가맹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

	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해지의 원인이 된 자신의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위약금의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임대장비, 교육자료 등 영업 지원 물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